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1) 상정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1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권 희 춘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다른 조례에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도록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함.(안 제8조제2항)
-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은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,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.

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
-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제7항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○ 특이사항 없음. | ○ 특이사항 없음. 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기금의 기금운용관”을 “기금을 운용하는 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”를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하고, 단서 중 “위원회”를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각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5. 유사·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
6.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
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,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
2. 부천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3명

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시장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”을 “총괄기금관리관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처리할 수 있다”를 “관리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335호 |
| 의결년월일 | 2008. 12. 22. (제148회) |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14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다른 조례에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도록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함.(안 제8조제2항)
- 나.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은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,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.
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- 다.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제7항 신설)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기금의 기금운용관”을 “기금을 운용하는 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”를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하고, 단서 중 “위원회”를 “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각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5. 유사·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
6.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
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,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
2. 부천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3명

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시장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”을 “총괄기금관리관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처리할 수 있다”를 “관리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기금의 개별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. 유사·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과 금융관련 전문가 2명 | <p>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. 유사·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6.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로 설치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</p> <p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2.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3명</p> <p>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</p> <p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⑦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연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시장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|
| <p>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·관리 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</p> | <p>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위하여 <u>총괄기금관리관</u>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, 총괄기금관리관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</u>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 예산 외로 <u>처리</u>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-----<u>총괄기금관리관</u>이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받아</u>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관리</u>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